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일정 잔고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 “활동성계좌”라 함은“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4조 (이용방법)

-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휴대폰 본인인증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인증과 통신사 휴대폰인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제5조 (조회)

- ① 고객은 제4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서비스에서는 은행에 가입된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에 한해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제 6조 (잔고이전·해지)

- ① 본 서비스에서는 제2조 제1항 제5호의“소액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본 서비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은행은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현금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 **제 7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제 8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 **제 9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